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48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2.

발 의 자:윤재옥・우재준・김위상

추경호 • 김기웅 • 김상훈

주호영 • 권영진 • 유영하

이인선 · 강대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,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 전 차원에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2021년 기준, 대구에는 334,698개의 중소기업이 있고, 중소기업비율이 99.94%에 달함. 또 중소기업 종사자수도 767,648명으로 비율로는 9 3.55%에 이름. 전국 8대 특·광역시 중 최고수준임.

또한 대구광역시에는 2014년 말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위치해 있어 중소기업은행이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고, 금융 및 전문컨설팅 제공 등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.

이에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 업 중심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, 국 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 중 "서울특별시에"를 "대구광역시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조(본점, 지점, 출장소, 대리점	제4조(본점, 지점, 출장소, 대리점		
의 설치) ① 중소기업은행은	의 설치) ①		
본점을 <u>서울특별시에</u> 둔다.	<u>대구광역시에</u>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	